



" 청림 청신호, 부패 적신호 "

※ 주택관리번호: 2021000639(85m<sup>2</sup> 이하)  
2021000640(85m<sup>2</sup> 초과)

[www.i-sh.co.kr](http://www.i-sh.co.kr)

# 제40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

2021. 08. 27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접수일정 및 접수방법 변경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



## 차 례

1. 공급일정 .....	7
2. 공급현황 .....	8
3. 신청자격 .....	13
4. 입주자 선정 .....	17
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26
6. 신청접수 일정 .....	28
7. 신청접수 안내 .....	29
8.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 .....	32
9. 동호추첨 및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	37
10. 계약 및 구비서류 .....	38
11. 유의사항 .....	39
12. 임대신청 문의 .....	41
13. 임대주택 위치안내 .....	42
〈별표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46
〈별표2〉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47
〈별표3〉 우편접수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48
단지별 유의사항(공통) .....	57
고덕강일지구 13단지 유의사항 .....	59

---



## 제40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청약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은 인터넷/모바일청약만 가능하므로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 이상)에 한하여 우편접수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청약기간 내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우리공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정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본사 방문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 ○ 우편접수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21.09.09.(목) ~ 09.10.(금), 10일(금)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접수인정
- 신청서 접수방법 : 등기우편
  - ※ 등기우편 외 일반우편/ 택배/ 착불 배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제출주소 :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부 장기전세주택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①신청서 1부, ②개인정보동의서 1부

- 우편접수는 선순위(일반공급-주거약자 1순위 및 우선공급) 대상자만 가능하며, 소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면적별 선순위 조건 및 소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선순위 조건 및 소득 조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하단 공고문 상세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공사에서 단순 입력하는 '신청대행'일 뿐이므로 신청서상 개인정보 오기재, 가점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우편 제출 전 최종 검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청약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상담내용,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1.08.27.(금)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자격기준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금회 대상주택: 래미안길음센터피스(33㎡), 수서동 721-1(35㎡)]**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형제, 자매)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단독세대주(1인 가구)임.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사람**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라도 **50㎡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단지, 동일면적의 일반공급 모집이 있는 경우(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은행 오입력 또는 오기재시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21000639(85㎡이하), 2021000640(85㎡초과)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공고문 [별표1]**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순위별 접수일정(아래 접수일정 또는 공고문 신청접수일정 참조)에 따라 청약하여야 하며 해당 순위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 시 「**저층(1~2층) 배정**」을 희망(신청)하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 내에서 저층(1,2층)으로 동호배정**하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하고 탈락자는 저층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하며, 저층(1~2층) 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할 경우 저층 미신청자도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당첨자 중 저층배정 되므로 당첨여부와는 관계없음)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 도입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이란?**

-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하여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
- 금회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는 단지별 평균 퇴거율 및 계약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대상 단지 및 모집 예비입주자 수는 공고문 하단 “2.공급현황 ■ **공가재공급 및 예비입주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입주 대기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해당 단지에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등 특별공급 신청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단지 공가 발생 시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대기 순번에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발표일로부터 1년인 2023년 2월 14일까지**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 1 공급일정

## ▶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 ▶ 청약신청 세부일정 및 방법

대상자	접수일정	청약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일반, 주거약자)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형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서동 721-1(35㎡): 강남, 송파, 서초, 성동, 광진, 용산구 거주자</li> <li>• 우면2지구(49㎡): 서초, 강남, 용산, 동작, 관악구 거주자</li> <li>• 내곡지구(49㎡): 서초, 강남, 용산, 동작, 관악구 거주자</li> </ul> </li> <li>- 건설형 50㎡이상 85㎡이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24회이상 납입한 사람</li> </ul> </li> <li>-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li> </ul> </li> </ul> </li> <li>○ 우선공급</li> </ul>	2021.09.15.(수) ~ 2021.09.16.(목) 10:00 ~ 17:00	인터넷청약 www.i-sh.co.kr/a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급(일반, 주거약자)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형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내 거주하는 사람</li> </ul> </li> <li>- 건설형 50㎡이상 85㎡이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사람으로서 6회이상 납입한 사람</li> </ul> </li> <li>- 85㎡초과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li> </ul> </li> </ul>	2021.09.24.(금)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급(일반, 주거약자)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형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초과 100%이하인 사람</li> <li>- 건설형 50㎡이상 85㎡이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85㎡이하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li> </ul> </li> </ul>	2021.09.27.(월) 10:00 ~ 17:00	

※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순위별 청약접수 결과는 각 순위별 청약접수 종료 익일(근무일)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2 공급현황

### ▶ 신규공급

※ 강동리엔파크13단지: 공사 건설형, 보라매자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단지임

단지명 (위 치)	신청 유형 (전용)	공급호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입주 시작 (예정)
		계	일반공급		우선 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시) 9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일반	주거 약자										
계		365	110	-	255									
강동리엔파크13단지 (강동구 상일동)	59㎡	339	89	-	250	325,000	32,500	292,500	59.91	25.94	47.1	132.95	지역 난방	'22.04
보라매자이 (동작구 신대방동)	84㎡	26	21	-	5	443,950	44,395	399,555	84.75	33.7	47.93	166.38	개별 난방	'22.03

### ▶ 공가재공급 및 예비입주자

※ 세곡지구 이하 지구(단지)는 공사 건설형, 개나리에스케이부 이하 단지는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임.

※ 단독세대주 신청가능 단지: 래미안길음센터피스(33㎡), 수서동 721-1(35㎡)

※ 금회 공가재공급 단지 '입주자'당첨의 경우'22년 3월(예정)부터 입주 가능하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후 예비입주자당첨 발표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자치구	단지명	전용 면적 (㎡)	유형	모집세대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계 (A+B)	일반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시) 9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금회 모집할 예비 입주자 (B)	대기중 예비자								
계				1,535	218	1,317	362								
강남구	세곡지구 - 강남데시앙파크 - 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 - 세곡리엔파크3,4단지	84㎡	일반	16	2	14	-	432,250	43,225	389,025	84.98	30.84	60.64	176.46	개별 난방
			주거약자	9	-	9	3	432,250	43,225	389,025	84.98	34.39	63.89	183.26	
	세곡2지구 - 래미안포레 - 강남한양수자인 - 한신희플러스6,8단지	59㎡	일반	45	-	45	15	384,750	38,475	346,275	59.97	25.1	36.64	121.71	개별 난방
			주거약자	12	-	12	1	384,750	38,475	346,275	59.97	25.1	36.64	121.71	
	84㎡	일반	10	-	10	2	471,250	47,125	424,125	84.85	33.45	51.84	170.14		
		주거약자	4	-	4	2	471,250	47,125	424,125	84.85	33.45	51.84	170.14		
수서동 721-1	35㎡	일반	5	-	5	7	200,200	20,020	180,180	35.37	18.81	22.12	76.3	지역 난방	
강동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 강일리버파크 2,3,4,6,9,10 단지	84㎡	일반	25	-	25	17	292,500	29,250	263,250	84.83	25.21	30.48	140.52	지역 난방
			주거약자	6	1	5	-	292,500	29,250	263,250	84.67	25.35	30.5	140.52	
	강일2지구 - 고덕리엔파크1~3단지	84㎡	일반	35	-	35	7	356,250	35,625	320,625	84.83	27.69	41.93	154.45	지역 난방
			주거약자	10	-	10	16	356,250	35,625	320,625	84.83	27.69	41.93	154.45	
	고덕강일2지구 - 강동리버스트 4,6,7,8단지	59㎡	일반	50	-	50	67	344,500	34,450	310,050	59.97	24.64	36.35	120.96	지역 난방

자치구	단지명	전용 면적 (㎡)	유형	모집세대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계 (A+B)	일반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시) 9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금회 모집할 예비 입주자 (B)	대기중 예비자								
강서구	마곡지구 - 마곡엠밸리 2,3,4,6,7,8,10,11, 12,14,15 단지	59㎡	일반	109	9	100	31	337,500	33,750	303,750	59.79	21.13	40.49	121.41	지역 난방
			주거약자	11	-	11	7	337,500	33,750	303,750	59.95	21.18	40.62	121.75	
		84㎡	일반	40	-	40	18	393,750	39,375	354,375	84.93	29.7	56.65	171.28	
			주거약자	5	-	5	-	393,750	39,375	354,375	84.93	29.7	56.65	171.28	
	발산 3단지	84㎡	일반	39	25	14	-	362,700	36,270	326,430	84.53	24.38	35.61	144.52	지역 난방
구로구	천왕지구 - 천왕이펜하우스 3,4,5,6단지	84㎡	일반	36	5	31	-	323,700	32,370	291,330	84.95	23.16	48.91	157.02	개별 난방
			주거약자	3	-	3	4	323,700	32,370	291,330	84.95	23.16	48.91	157.02	
	천왕2지구 - 천왕연지타운1,2단지	84㎡	일반	3	-	3	-	318,750	31,875	286,875	84.97	27.79	56.69	169.45	개별 난방
			주거약자	3	-	3	2	318,750	31,875	286,875	84.98	34.37	70.27	189.62	
마포구	상암2지구 - 상암월드컵파크 9,10,11단지	84㎡	일반	15	-	15	9	388,700	38,870	349,830	84.89	29.23	53.99	168.11	지역 난방
			주거약자	3	-	3	5	388,700	38,870	349,830	84.79	29.3	53.94	168.03	
서초구	내곡지구 - 서초더샵포레 - 서초포레스타 2,3,5,6,7단지	49㎡	일반	31	13	18	-	418,600	41,860	376,740	49.39	22.46	42.7	114.55	개별 난방
			주거약자	12	-	12	4	418,600	41,860	376,740	49.39	22.46	42.7	114.55	
		54㎡	일반	13	-	13	1	503,750	50,375	453,375	54.97	24.18	45.53	124.68	
			주거약자	7	1	6	2	503,750	50,375	453,375	59.64	20.56	42.28	122.48	
		59㎡	일반	71	21	50	-	503,750	50,375	453,375	59.96	20.52	42.5	122.98	
			주거약자	7	1	6	2	503,750	50,375	453,375	59.64	20.56	42.28	122.48	
	84㎡	일반	7	-	7	6	598,000	59,800	538,200	84.41	30.39	56.73	171.53		
		주거약자	3	-	3	-	598,000	59,800	538,200	84.8	27.62	58.81	171.23		
	양재동 102번지	59㎡	일반	10	4	6	-	360,000	36,000	324,000	59.77	27.76	36.96	124.49	개별 난방
		84㎡	일반	4	-	4	-	438,750	43,875	394,875	84.97	36.48	52.55	174	
	양재동 212번지	59㎡	일반	17	2	15	-	378,950	37,895	341,055	59.77	24.89	31.59	116.25	개별 난방
		84㎡	일반	10	-	10	-	464,750	46,475	418,275	84.97	32.4	44.92	162.29	
		114㎡	일반	5	2	3	-	617,500	61,750	555,750	114.78	43.22	60.69	218.69	
	우면2지구 - 서초네이처힐 1,2,3,5단지	49㎡	일반	5	-	5	3	356,250	35,625	320,625	49.87	15.48	45.86	111.21	개별 난방
84㎡		일반	23	2	21	3	510,000	51,000	459,000	84.61	28.94	51.64	165.19		
114㎡		일반	16	-	16	12	596,250	59,625	536,625	114.95	32.67	62.42	210.04		
송파구	마천지구 - 송파파크데일1,2단지	84㎡	일반	5	-	5	1	492,700	49,270	443,430	84.13	25.64	50.99	160.76	개별 난방
			주거약자	4	1	3	-	492,700	49,270	443,430	84.13	25.64	50.99	160.76	
	위례포레샤인23단지	59㎡	일반	35	-	35	2	380,900	38,090	342,810	59.97	26.17	41.78	127.92	지역 난방
	장지구 - 송파퍼인타운1,6단지	84㎡	일반	6	-	6	-	455,000	45,500	409,500	84.94	20.52	41.27	146.73	개별 난방
양천구	신정3지구 - 신정이펜하우스1~4단지	84㎡	일반	38	9	29	-	291,200	29,120	262,080	84.86	23.84	52.43	161.13	지역 난방
			주거약자	6	-	6	4	291,200	29,120	262,080	84.86	23.84	52.43	161.13	
	신정4보급자리주택	59㎡	일반	12	1	11	-	204,750	20,475	184,275	59.99	28.9	35.86	124.75	지역 난방
은평구	은평1지구 - 은평1-2,1-3,1-4,1-5, 1-7,1-8,1-9,1-10,1-11	84㎡	일반	23	-	23	22	341,250	34,125	307,125	84.79	30.26	52.23	167.28	지역 난방

제40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자치구	단지명	전용 면적 (㎡)	유형	모집세대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계 (A+B)	일반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시) 9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금회 모집할 예비 입주자 (B)	대기중 예비자								
	은평2지구 - 은평2-1,2-2,2-3, 2-4,2-5,2-11,2-12	84㎡	일반	55	-	55	43	360,750	36,075	324,675	84.72	26.51	44.51	155.74	지역 난방
	은평3지구 - 은평3-3,3-4,3-5	84㎡	일반	73	-	73	18	328,250	32,825	295,425	84.84	22.62	38.21	145.67	지역 난방
	은평3-12	84㎡	일반	3	-	3	-	360,750	36,075	324,675	84.78	26.44	55.09	166.31	개별 난방
	은평3-10	84㎡	일반	25	1	24	-	360,750	36,075	324,675	84.96	27.76	45.35	158.07	지역 난방
의정 부시	상계장암지구 - 수락리버시티1,2단지	84㎡	일반	11	-	11	7	245,700	24,570	221,130	84.81	28.06	37.53	150.4	지역 난방
종량구	신내3지구 - 우디안1단지 - 데시앙포레	84㎡	일반	4	-	4	10	285,000	28,500	256,500	84.65	34.1	51.48	170.23	개별 난방
	주거약자		3	-	3	6	285,000	28,500	256,500	84.68	32.26	51.51	168.45		
	신내데시앙	84㎡	일반	27	12	15	-	294,450	29,445	265,005	84.99	21.61	32.8	139.4	지역 난방
강남구	개나리에스케이뷰	84㎡	일반	5	1	4	-	861,250	86,125	775,125	84.99	27.97	60.99	173.95	지역 난방
	래미안그레이트	59㎡	일반	9	2	7	-	591,500	59,150	532,350	59.97	25.67	35.8	121.44	개별 난방
	래미안도곡카운티	59㎡	일반	5	1	4	-	633,750	63,375	570,375	59.98	21.59	43.73	125.3	지역 난방
	역삼자이	59㎡	일반	17	7	10	-	566,300	56,630	509,670	59.99	28.12	41.43	129.54	지역 난방
	테헤란아이파크	59㎡	일반	7	1	6	-	676,000	67,600	608,400	59.78	23.14	44.66	127.58	지역 난방
강동구	암사힐스테이트	59㎡	일반	13	-	13	-	372,450	37,245	335,205	59.99	21.69	40.1	121.78	개별 난방
		84㎡	일반	4	1	3	-	520,000	52,000	468,000	84.99	28.97	56.81	170.77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	59㎡	일반	7	1	6	-	337,500	33,750	303,750	59.55	23.45	35.44	118.44	개별 난방
강서구	강서한강자이	84㎡	일반	7	3	4	-	396,500	39,650	356,850	84.99	27.43	53.67	166.09	개별 난방
	마곡푸르지오	59㎡	일반	4	1	3	-	292,500	29,250	263,250	59.87	23.1	27.24	110.21	개별 난방
	보람더하임	84㎡	일반	7	3	4	-	448,500	44,850	403,650	84.98	20.02	47.36	152.36	개별 난방
광진구	강변SK뷰	84㎡	일반	5	-	5	-	463,450	46,345	417,105	84.81	32.64	40.8	158.25	개별 난방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	59㎡	일반	4	1	3	-	382,200	38,220	343,980	59.87	26.44	52.13	138.44	개별 난방
		84㎡	일반	3	-	3	-	406,250	40,625	365,625	84.79	31.1	73.84	189.73	
한라녹턴	71㎡	일반	4	1	3	-	230,750	23,075	207,675	71.82	18.42	28.78	119.02	개별 난방	
구로구	개봉푸르지오	59㎡	일반	21	5	16	-	261,000	26,100	234,900	59.86	25.81	30.83	116.5	개별 난방
	고척유진마젤란	84㎡	일반	7	3	4	-	304,200	30,420	273,780	84.92	22.75	29.6	137.27	개별 난방

자치구	단지명	전용 면적 (㎡)	유형	모집세대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계 (A+B)	일반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시) 9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금회 모집할 예비 입주자 (B)									대기중 예비자
	온수힐스테이트	59㎡	일반	16	3	13	-	250,250	25,025	225,225	59.98	21.25	32.61	113.84	개별 난방
금천구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	59㎡	일반	26	11	15	-	305,500	30,550	274,950	59.94	22.17	34.9	117.01	개별 난방
	백운한비치	84㎡	일반	4	1	3	-	292,500	29,250	263,250	84.98	21.68	29.44	136.1	개별 난방
동대문구	신인문어울림	59㎡	일반	4	1	3	-	357,500	35,750	321,750	59.92	21.8	27.24	108.96	개별 난방
동작구	두산위브(사당)	59㎡	일반	5	2	3	-	390,000	39,000	351,000	59.98	20.54	37.46	117.98	개별 난방
	상도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59㎡	일반	8	3	5	-	382,200	38,220	343,980	59.98	24.23	34.43	118.64	개별 난방
		84㎡	일반	6	1	5	-	490,750	49,075	441,675	84.81	27.17	48.69	160.67	개별 난방
	상도 두산위브트레지움	59㎡	일반	13	5	8	-	377,000	37,700	339,300	59.79	23.65	35.22	118.66	개별 난방
84㎡		일반	10	4	6	-	531,700	53,170	478,530	84.86	32.61	49.99	167.46	개별 난방	
마포구	동원데자뷰(망원동)	82㎡	일반	4	1	3	-	394,550	39,455	355,095	82.9	17.53	35.47	135.9	개별 난방
서대문구	동원베네스트	59㎡	일반	8	2	6	-	224,250	22,425	201,825	59.95	18.57	32.83	111.35	개별 난방
	흥제금호어울림	59㎡	일반	7	2	5	-	260,000	26,000	234,000	59.18	21.76	38.61	119.55	개별 난방
서초구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일반	20	-	20	2	669,500	66,950	602,550	59.99	27.53	37.4	124.92	지역 난방
	래미안퍼스티지	59㎡	일반	17	6	11	-	837,850	83,785	754,065	59.89	27.57	38.98	126.44	지역 난방
		84㎡	일반	5	1	4	-	1,001,000	100,100	900,900	84.93	28.21	55.28	168.42	지역 난방
	반포리체	59㎡	일반	7	1	6	-	698,750	69,875	628,875	59.99	24.84	37.2	122.03	지역 난방
	반포자이	59㎡	일반	25	5	20	-	698,750	69,875	628,875	59.98	24.76	43.09	127.83	지역 난방
	서초 두산위브트레지움	84㎡	일반	4	1	3	-	682,500	68,250	614,250	84.96	20.81	51.79	157.56	지역 난방
	서초푸르지오써밋	59㎡	일반	19	2	17	-	581,000	58,100	522,900	59.92	21.04	43.86	124.82	지역 난방
아크로리버파크반포	59㎡	일반	25	6	19	-	837,850	83,785	754,065	59.97	20.25	53.4	133.62	지역 난방	
성북구	동일하이빌뉴시티 (신월곡)	84㎡	일반	7	3	4	-	352,950	35,295	317,655	84.97	21.37	48.19	154.53	개별 난방
	래미안길음센터퍼스	33㎡	일반	25	-	25	3	209,250	20,925	188,325	33.46	13.62	21.13	68.21	개별 난방
		73㎡	일반	8	-	8	-	380,250	38,025	342,225	73.92	28.24	46.65	148.81	개별 난방
84㎡	일반	10	1	9	-	438,750	43,875	394,875	84.66	33.51	53.44	171.61	개별 난방		
양천구	동원데자뷰(신월동)	59㎡	일반	4	1	3	-	235,950	23,595	212,355	59.71	17.37	25.94	103.02	개별 난방
	목동센트럴푸르지오	57㎡	일반	9	2	7	-	388,500	38,850	349,650	57.96	17.85	41.59	117.4	지역 난방
		84㎡	일반	5	2	3	-	650,000	65,000	585,000	84.98	25.44	60.98	171.4	지역 난방
	수명산롯데캐슬	59㎡	일반	4	1	3	-	196,950	19,695	177,255	59.98	16.82	29.62	106.42	개별 난방
84㎡		일반	4	1	3	-	334,750	33,475	301,275	84.96	22.69	41.95	149.6	개별 난방	

자치구	단지명	전용 면적 (㎡)	유형	모집세대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계 (A+B)	일반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시) 9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금회 모집할 예비 입주자 (B)									대기중 예비자
	양천롯데캐슬	59㎡	일반	4	1	3	-	253,500	25,350	228,150	59.88	21.9	42.74	124.52	개별 난방
영등 포구	문래동모아미래도	59㎡	일반	4	1	3	-	294,450	29,445	265,005	59.9	20.21	34.75	114.86	개별 난방
		84㎡	일반	3	-	3	-	349,700	34,970	314,730	84.98	26.98	49.3	161.26	
은평구	힐스테이트백련산4차	59㎡	일반	11	2	9	-	304,200	30,420	273,780	59.98	20.39	41.32	121.69	개별 난방
중랑구	e편한세상화랑대	59㎡	일반	13	2	11	-	299,000	29,900	269,100	59.95	22.86	43.62	126.43	개별 난방
	면목2코오롱하늘채	59㎡	일반	4	1	3	-	305,500	30,550	274,950	59.96	25.61	42.52	128.09	개별 난방

- 지구단위 공급(세곡지구, 세곡2지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지구, 마곡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 상암2지구, 내곡지구, 우면2지구, 마천지구, 장지지구, 신정3지구, 은평1·2·3지구, 상계장암지구, 신내3지구)의 경우 전산추첨에 의해 지구에 속한 단지 중 하나의 단지에 입주자(혹은 예비입주자)로 선정됨
- 위 주택면적은 동일단지 내 일반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나, 전세금액은 동일함. 단지별 타입 구분 없이 신청접수 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및 동호가 배정됨.
-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등은 전자팸플릿(홈페이지 게시)을 참조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스위치 낮게 설치 등)을 갖춘 주택으로 저층(1~2층)에 건립되어 있으며(세곡리엔파크4단지, 서초더샵포레, 서초포레스타2단지 제외), 편의시설 설치유무는 지구, 단지, 주택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사람은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되지 않음(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받기 원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은 **주거약자 주택**으로 신청해야 함)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2층)에 배정될 수 있음.
- 마곡지구 전용 84㎡형, 은평지구 일부세대는 복층 구조인 경우가 있으며,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하여 복층세대에 배정될 수 있음
- 은평3-12단지 중 일부 세대(4세대)는 침실2 벽면 마감재가 황토벽돌이 적용되어, 일반 벽지에 비하여 마감이 거칠며, 특성상 황토가 다소 묻어날 수 있으며,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하여 배정될 수 있음
- 고덕강일2지구 강동리버스트6단지 중 일부 세대(15세대)는 1개의 방(침실3)이 일반거실부분과 분리되어 가로변(공공보행통로)에 면한 방으로 세대외부에서 별도로 진입할 수 있는 별채형 주택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하여 배정될 수 있음
- 공사 재공급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공급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위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현장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함.
- 장기전세주택은 해당주택의 법정 임대유기기간으로 거주기한이 제한될 수 있음.

### 3 신청자격

#### 가. 공통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8.27.)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상계장압지구는 의정부시 거주자 포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신청 할 수 없음.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함.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등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어야 하며, 이는 신청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신청자 중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미만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형제, 자매)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단독세대주(1인 가구)임.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사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라도 **50㎡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부동산·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 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중복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 신청서 상 ‘**현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 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③ 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2018.12.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나. 면적별 자격기준

### ■ 60㎡이하

- 33㎡형 : 래미안길음센터피스
- 35㎡형 : 수서동 721-1
- 49㎡형 : 내곡지구, 우면2지구
- 54㎡형 : 내곡지구
- 57㎡형 : 목동센트럴푸르지오
- 59㎡형 : 강동리엔파크13단지, 고덕강일2지구, 내곡지구, 마곡지구, 세곡2지구, 신정4지구, 양재동102, 양재동212, 위례포레샤인23단지, e편한세상화랑대, 개봉푸르지오,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 동원데자뷰, 동원베네스트, 두산위브(사당), 래미안그레이튼, 래미안도곡카운티,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래미안퍼스티지,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 마곡푸르지오, 면목2코오롱하늘채, 문래동모아미래도, 반포리체, 반포자이, 상도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서초푸르지오써밋, 수명산롯데캐슬, 신이문어울림, 아크로리버파크, 암사힐스테이트, 양천롯데캐슬, 역삼자이, 온수힐스테이트, 올림픽파크한양수자인, 테헤란아이파크, 흥제금호어울림, 힐스테이트백련산4차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2,991,631원 이하	4,562,535원 이하	6,240,520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393,647원 이하
	소득산정기준	※ 7인가구(7,778,023원 이하), 8인가구(8,162,399원 이하) ○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 산정(태아 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별 세부 조사항목은 공고문 <b>별표2</b> 참고					
부동산	○ <b>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 21,550만원 이하</b> <b>(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b> ① 건축물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②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은 포함됨						
자동차	○ <b>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3,496만원 이하</b>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b>비영업용 승용자동차</b> 에 한함 -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b>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b> - <b>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b>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b>보조금을 제외한 금액</b>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 60㎡초과 85㎡이하

- 71㎡형 : 한라녹턴
- 73㎡형 : 래미안길음센터피스
- 82㎡형 : 망원동 동원데자뷰
- 84㎡형 : 보라매자이,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내곡지구, 마곡지구, 마천지구, 상계장암지구, 상암2지구, 세곡지구, 세곡2지구, 신내3지구, 신정3지구, 우면2지구, 은평1·2·3지구, 장지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 은평3-10, 은평3-12, 발산3단지, 신내데시앙, 양재102, 양재212, 강변SK뷰, 강서한강자이, 개나리에스케이뷰, 고척유진마젤란, 동일하이빌뉴시티,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래미안퍼스티지,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 목동센트럴푸르지오, 문래동모아미래도, 백운한비치, 보람더하임, 상도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서초두산위브트레지움, 수명산롯데캐슬, 암사힐스테이트

※ 상계장암지구 신청자는 서울특별시 또는 의정부시 거주자 포함(이 경우 거주기간은 서울시와 의정부시를 동일 지역으로 간주함)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3,589,957원 이하	5,475,042원 이하	7,488,624원 이하	8,513,046원 이하	8,513,046원 이하	8,872,376원 이하
	소득산정 기준	※ 7인가구(9,333,628원 이하), 8인가구(9,794,879원 이하)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 21,550만원 이하 ※ 부동산소유 기준 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의 부동산 기준 참조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3,496만원 이하 ※ 자동차소유 기준 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의 자동차 기준 참조						

■ 85㎡초과 주택

- 114㎡형 : 우면2지구, 양재 212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4,487,447원 이하	6,843,803원 이하	9,360,780원 이하	10,641,308원 이하	10,641,308원 이하	11,090,471원 이하
	소득산정 기준	※ 7인가구(11,667,035원), 8인가구(12,243,599원)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 21,550만원 이하 ※ 부동산소유 기준 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의 부동산 기준 참조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3,496만원 이하 ※ 자동차소유 기준 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의 자동차 기준 참조						

## 4 입주자 선정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형태에 따라 해당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청약 전 해당 입주자 저축가입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필요
- ※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가능
-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익일[2021.08.30.(월)]부터 발급 가능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주택관리번호 : 2021000639(85㎡이하), 2021000640(85㎡초과)

### 가. 일반공급(일반)

#### ■ 공사 건설형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p>〈50㎡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형 : 수서동 721-1</li> <li>• 49㎡형 : 내곡지구, 우면2지구</li> </ul>	<p>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td> <td>2,094,142원 이하</td> <td>3,193,775원 이하</td> <td>4,368,364원 이하</td> <td>4,965,944원 이하</td> <td>4,965,944원 이하</td> <td>5,175,553원 이하</td> </tr>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td> <td>2,991,631원 이하</td> <td>4,562,535원 이하</td> <td>6,240,520원 이하</td> <td>7,094,205원 이하</td> <td>7,094,205원 이하</td> <td>7,393,647원 이하</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94,142원 이하	3,193,775원 이하	4,368,36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2,991,631원 이하	4,562,535원 이하	6,240,520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393,647원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94,142원 이하	3,193,775원 이하	4,368,36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2,991,631원 이하	4,562,535원 이하	6,240,520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393,647원 이하															
<p>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서동 721-1(35㎡): 강남, 송파, 서초, 성동, 광진, 용산구 거주자</li> <li>• 우면2지구(49㎡): 서초, 강남, 용산, 동작, 관악구 거주자</li> <li>• 내곡지구(49㎡): 서초, 강남, 용산, 동작, 관악구 거주자</li> </ul> </li> <li>○ 2순위 : 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해당 입주자격은 충족해야 함)</li> </ul> <p>※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p>																						
<p>※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p> <p>※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함</p>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p>〈50㎡이상 60㎡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4㎡형 : 내곡지구</li> <li>• 59㎡형 : 강동리엔파크13단지, 고덕강일2지구, 내곡지구, 마곡지구, 세곡2지구, 신정4지구, 양재102, 양재212, 위례포레샤인 23단지</li> </ul>	<p>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p> <p>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p> <p>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p> <p>※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p> <table border="1" data-bbox="486 577 1476 835">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td> <td>2,094,142원 이하</td> <td>3,193,775원 이하</td> <td>4,368,364원 이하</td> <td>4,965,944원 이하</td> <td>4,965,944원 이하</td> <td>5,175,553원 이하</td> </tr>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td> <td>2,991,631원 이하</td> <td>4,562,535원 이하</td> <td>6,240,520원 이하</td> <td>7,094,205원 이하</td> <td>7,094,205원 이하</td> <td>7,393,647원 이하</td> </tr> </tbody> </table> <p>※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3. 신청자격 사항 ■ 60㎡이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p> <p>※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함</p>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94,142원 이하	3,193,775원 이하	4,368,36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2,991,631원 이하	4,562,535원 이하	6,240,520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393,647원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94,142원 이하	3,193,775원 이하	4,368,36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2,991,631원 이하	4,562,535원 이하	6,240,520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393,647원 이하																
<p>〈60㎡초과 85㎡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4㎡형 :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내곡지구, 마곡지구, 마천지구, 상계장암지구, 상암2지구, 세곡지구, 세곡2지구, 신내3지구, 신정3지구, 우면2지구, 은평1·2·3지구, 장지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 발산3단지, 신내데시앙, 양재102, 양재212, 은평3-10, 은평3-12</li> </ul>	<p>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p> <p>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p> <p>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p> <p>※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3. 신청자격 사항 ■ 60㎡초과 85㎡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p> <p>※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함</p>																					
<p>〈85㎡초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4㎡형 : 우면2지구, 양재 212</li> </ul>	<p>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p> <p>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p> <p>※ 금회 청약가능 예치 기준금액 - 전용 102㎡초과 135㎡이하 : 1,000만원</p> <p>※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3. 신청자격 사항 ■ 전용85㎡초과 주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p> <p>※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함</p>																					

### ■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p style="text-align: center;"><b>&lt;60㎡이하&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3㎡형 : 래미안길음센터피스</li> <li>• 57㎡형 : 목동센트럴푸르지오</li> <li>• 59㎡형 : e편한세상화랑대, 개봉푸르지오,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 동원데자뷰, 동원베네스트, 두산위브(사당), 래미안그레이트, 래미안도곡카운티,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래미안퍼스티지,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 마곡푸르지오, 면목2코오롱하늘채, 문래동모아미래도, 반포리체, 반포자이, 상도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서초푸르지오써밋, 수명산롯데캐슬, 신이문어울림, 아크로리버파크, 암사힐스테이트, 양천롯데캐슬, 역삼자이, 온수힐스테이트, 올림픽파크한양수자인, 테헤란아이파크, 홍제금호어울림, 힐스테이트백련산4차</li> </ul>	<p>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사람</p> <p>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자로서 매월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사람</p> <p>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p> <p>※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b>“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b>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b>“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b>에 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b>&lt;60㎡초과 85㎡이하&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1㎡형 : 한라녹턴</li> <li>• 73㎡형 : 래미안길음센터피스</li> <li>• 82㎡형 : 망원동 동원데자뷰</li> <li>• 84㎡형 : 보라매자이, 강변SK뷰, 강서한강자이, 개나리에스케이뷰, 고척유진마젤란, 동일하이빌뉴시티,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래미안퍼스티지,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 목동센트럴푸르지오, 문래동모아미래도, 백운한비치, 보람더하임, 상도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서초두산위브트레지움, 수명산롯데캐슬, 암사힐스테이트</li> </ul>	<p>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사람</p> <p>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자로서 매월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사람</p> <p>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p> <p>※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b>“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b>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b>“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b>에 의함</p>

### ※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공사 건설형	50㎡미만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거주지순위 ➔	배점합산
	50㎡이상 60㎡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배점합산
	60㎡초과 85㎡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순위	➔	배점합산
	85㎡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순위	➔	배점합산
서울시 매입형	85㎡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순위	➔	배점합산

배점 동일할 경우  
미성년자녀 수가 많은순  
→ 전산추첨으로 결정

나. 일반공급(주거약자)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b>신청자격</b>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1956. 8.27.이전 출생, 당일포함)]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①~⑥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 가능																					
<b>&lt;50㎡미만&gt;</b> • 49㎡형 : 내곡지구	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td> <td>2,094,142원 이하</td> <td>3,193,775원 이하</td> <td>4,368,364원 이하</td> <td>4,965,944원 이하</td> <td>4,965,944원 이하</td> <td>5,175,553원 이하</td> </tr>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td> <td>2,991,631원 이하</td> <td>4,562,535원 이하</td> <td>6,240,520원 이하</td> <td>7,094,205원 이하</td> <td>7,094,205원 이하</td> <td>7,393,647원 이하</td> </tr> </tbody> </table>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곡지구(49㎡): 서초, 강남, 용산, 동작, 관악구 거주자</li> </ul> </li> <li>○ 2순위 : 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li> </ul> ※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94,142원 이하	3,193,775원 이하	4,368,36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2,991,631원 이하	4,562,535원 이하	6,240,520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393,647원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94,142원 이하	3,193,775원 이하	4,368,36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2,991,631원 이하	4,562,535원 이하	6,240,520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393,647원 이하																
<b>&lt;50㎡이상 60㎡이하&gt;</b> • 59㎡형 : 내곡지구, 마곡지구, 세곡2지구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td> <td>2,094,142원 이하</td> <td>3,193,775원 이하</td> <td>4,368,364원 이하</td> <td>4,965,944원 이하</td> <td>4,965,944원 이하</td> <td>5,175,553원 이하</td> </tr>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td> <td>2,991,631원 이하</td> <td>4,562,535원 이하</td> <td>6,240,520원 이하</td> <td>7,094,205원 이하</td> <td>7,094,205원 이하</td> <td>7,393,647원 이하</td> </tr> </tbody> </table> ※ 소득, 부동산, 자동차 자격기준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94,142원 이하	3,193,775원 이하	4,368,36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2,991,631원 이하	4,562,535원 이하	6,240,520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393,647원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94,142원 이하	3,193,775원 이하	4,368,36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2,991,631원 이하	4,562,535원 이하	6,240,520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393,647원 이하																
<b>&lt;60㎡초과 85㎡이하&gt;</b> • 84㎡형 :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내곡지구, 마곡지구, 마천지구, 상암2지구, 세곡지구, 세곡2지구, 신내3지구, 신정3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초과 85㎡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b>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b>	<b>※ 주거약자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b>			
	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50㎡미만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거주지 순위 ➔	배점합산
	50㎡이상 60㎡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배점합산
	60㎡초과 85㎡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순위	➔	배점합산
	<b>▶ 주거약자용 주택 가점기준표</b>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 수 (태아 포함, 공급신청자 제외)	3인이상	2인	1인
	②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③ 사회 취약계층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전원에 해당]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 횟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회차)	60회 이상	48회이상 60회미만	36회이상 48회미만	
⑤ 장애인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전원에 해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⑥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8점 - 그 외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6점				
※ 상기 가점기준표 중 ①부양가족수, ②서울시연속거주기간, ⑥감점적용 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5.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과 동일함 ※ ③사회 취약계층의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 생계급여, 의료급여이외의 수급자는 동법 7조의 이외 수급자를 말함				

## 다. 우선공급

### ■ 우선공급 배정호수

#### (1) 공사 건설형

단지명	유형 (전용)	계	노부모 부양자	장 애 인	장기 복무 제대 군인	복합 이탈 주민	중소 기업 근로 자	비정 규직 근로 자	지원 대상 한부 모 가족	65세 이상 고령 자	납북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등, 범죄피해자, 성폭력피해자, 등록포로, 파독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다자녀 가구	국가 유공 자등	독립 유공자	영구 임대 자격 상실 자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저소득 근로 신혼 부부	신혼 부부 · 재녀가 만6세 이하 한부모 가족 등
강동리엔파크 13단지	59㎡	250	6	6	6(3)	6(3)	6	6	6	6	6	33	33(16)	16(8)	6	6	1	101

(2) 서울시 매입형

단지명	유형 (전용)	계	노부모 부양자	3자녀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등
보라매자이	84㎡	5	1	3	1(1)

\* 괄호안 숫자는 예비추천인원임

■ 우선공급 세부항목

1) 공사 건설형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공통	위 "3. 신청자격 가,나항"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노부모부양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56. 8.27이전 출생(당일포함)]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고,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되 동 소득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 정도인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사람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창업부에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사람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사람(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사람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해당구청, 주민센터에 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사람)
65세이상 고령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1956. 8.27.이전 출생(당일포함)] 고령자
납북피해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제출)
성폭력피해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등록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파독근로자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해외거주 재외동포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사·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자녀 가구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2002.8.28.이후 출생, 당일포함)]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 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있는 사람(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국가유공자 등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b>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사람</b>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에서 <b>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사람</b>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에 한함)중 입주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한 무주택세대구성원(영구임대주택 입주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①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의 자격(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대상자는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르며, 대상자 증빙 가능하여야 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의 자격(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으로 1회 이상 우선공급(계약)을 받은 사람은 제외
저소득 근로신혼부부 지정공급대상	2011년 우리공사의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용 지정공급제」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한 사람 중, 2017년 거주 우수가구 조건을 만족하여 제1차 2년 계약연장 대상으로 선정되어 재계약(2017.4~2018.6)한 사람 - 단, 재계약 이후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퇴거한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 근로신혼부부 우선공급 해당 대상자는 우리공사 및 관할센터에서 개별 안내문 통보 * <b>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경우, 우선공급에서 일괄 탈락 처리한 뒤 일반공급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해당자만 청약신청하기 바람</b>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b>“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b> 에 의함	

## 2) 공사 건설형: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우선공급은 일반공급과 다른 별도의 순위가 적용됩니다.

항목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신청 자격	위 <b>‘3. 신청자격 가,나항’</b>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b>신혼부부</b>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 <b>예비신혼부부</b>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b>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b>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심사 시 임신중인 자녀수는 세대원에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 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청약자격 여부 확인(임신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 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로 인정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혼인기간 산정
입주자 선정 순위	①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40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b>동일 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b>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td> <td>2,094,142원 이하</td> <td>3,193,775원 이하</td> <td>4,368,364원 이하</td> <td>4,965,944원 이하</td> <td>4,965,944원 이하</td> <td>5,175,553원 이하</td> </tr>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td> <td>2,991,631원 이하</td> <td>4,562,535원 이하</td> <td>6,240,520원 이하</td> <td>7,094,205원 이하</td> <td>7,094,205원 이하</td> <td>7,393,647원 이하</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94,142원 이하	3,193,775원 이하	4,368,36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2,991,631원 이하	4,562,535원 이하	6,240,520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393,647원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94,142원 이하	3,193,775원 이하	4,368,36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4,965,94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2,991,631원 이하	4,562,535원 이하	6,240,520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094,205원 이하	7,393,647원 이하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동일점수인 경우 <b>미성년자녀 수 (태아 수 포함)가 많은 순으로</b> 입주자를 선정하되, <b>미성년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b> 입주자 선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3점</th> <th>2점</th> <th>1점</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단, 2인가구는 60%이하)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수</th> <th>기준금액</th> </tr> </thead> <tbody> <tr> <td>2인가구</td> <td>2,737,521원 이하</td> </tr> </tbody> </table> </td> </tr> <tr> <td>미성년자녀수(태아 포함)</td> <td>3인이상</td> <td>2인</td> <td>1인</td> </tr> <tr> <td>서울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td> <td>3년이상</td> <td>1년이상 3년미만</td> <td>1년미만</td> </tr> <tr> <td>청약납입횟수</td> <td>24회이상</td> <td>12회이상 24회미만</td> <td>6회이상 12회미만</td> </tr> <tr> <td>현 배우자와 혼인기간 ※ <b>신혼부부만 적용</b></td> <td>3년이하</td> <td>3년초과 5년이하</td> <td>5년초과 7년이하</td> </tr> <tr> <td>자녀의 나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가장 어린 자녀기준으로 적용) ※ <b>한부모가족만 적용</b></td> <td>만2세 이하</td> <td>만3세 또는 만4세</td> <td>만5세 또는 만6세</td> </tr> </tbody> </table>	구분	3점	2점	1점	가구소득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단, 2인가구는 60%이하)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수</th> <th>기준금액</th> </tr> </thead> <tbody> <tr> <td>2인가구</td> <td>2,737,521원 이하</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기준금액	2인가구	2,737,521원 이하	미성년자녀수(태아 포함)	3인이상	2인	1인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3년이상	1년이상 3년미만	1년미만	청약납입횟수	24회이상	12회이상 24회미만	6회이상 12회미만	현 배우자와 혼인기간 ※ <b>신혼부부만 적용</b>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자녀의 나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가장 어린 자녀기준으로 적용) ※ <b>한부모가족만 적용</b>	만2세 이하	만3세 또는 만4세	만5세 또는 만6세			
	구분	3점	2점	1점																																
	가구소득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단, 2인가구는 60%이하)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수</th> <th>기준금액</th> </tr> </thead> <tbody> <tr> <td>2인가구</td> <td>2,737,521원 이하</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기준금액	2인가구	2,737,521원 이하																												
	가구원수	기준금액																																		
2인가구	2,737,521원 이하																																			
미성년자녀수(태아 포함)	3인이상	2인	1인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3년이상	1년이상 3년미만	1년미만																																	
청약납입횟수	24회이상	12회이상 24회미만	6회이상 12회미만																																	
현 배우자와 혼인기간 ※ <b>신혼부부만 적용</b>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자녀의 나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가장 어린 자녀기준으로 적용) ※ <b>한부모가족만 적용</b>	만2세 이하	만3세 또는 만4세	만5세 또는 만6세																																	
<b>입주시 유의 사항</b>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b>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b>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사람으로 신청이후에는 변경 불가. - <b>대표신청자를 기준으로 우선공급 가점 및 일반공급 전환 시 가점사항이 적용</b> 되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향후 제출할 <b>예비신혼부부 가구구성 확인서</b> 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이는 신청 자격 검증대상임.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b>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b> 하여야 하며 제출 불가시 공급계약이 취소됨.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자격 신청자가 임신 중인 경우'미성년자녀수'는 태아 수만큼 가점이 인정되나'자녀의 나이'는 출산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시 적용되므로 가점을 받을 수 없음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됨 • 임신부부 : 출산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낙태관련 진단서(임신주수 기재분) 제출 • 입양부부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3) 서울시 매입형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공통	위 "3. 신청자격 가,나항"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노부모부양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56. 8.27이전 출생(당일포함)]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b>3년이상</b> 부양하고 있는 사람(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고,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3자녀이상 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2002.8.28이후 출생, 당일포함)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있는 사람 ※ 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b>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b> 인정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국가유공자 등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사람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함	

- ※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우선공급대상자로 인정 됨
- ※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동일단지, 동일면적의 일반공급 모집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며, 우선공급대상자는 청약신청 시 해당 우선공급항목을 체크하여 신청하여야 함
-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등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순위에 의하되(예비추천자 포함), 반드시 별도로 우리공사 청약신청기간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로 선정 불가하며, 예비추천자도 반드시 청약신청기간에 청약신청을 해야 대상자가 됨)
- ※ '저소득근로신혼부부'는 우리공사에서 해당대상 자격대상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지만, 반드시 별도로 우리공사 청약신청기간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불가)
-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배정호수의 괄호 안 숫자는 예비추천 인원으로서 기본추천자가 심사과정 중 걸격되는 경우 배정호수 내에서 예비추천자가 순번에 따라 심사대상이 되며, 걸격자 보충 후 남은 예비추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 대상세대로 전환됨
-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신청자라도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주거약자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공급되오니, 주거약자 편리 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원하는 경우 '주거약자 주택'을 신청해야 함

####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구분	면적 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공사 건설형	우선공급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배점합산
	※ 적용 제외대상 항목 :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이하인 한부모가족	60㎡ 초과	배점합산
	장애인 우선공급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60㎡ 이하	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배점합산
서울시 매입형	우선공급	전면적	배점합산
※ 적용 제외대상 항목 : 기관추천 대상자			

- ※ 기관추천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등, 독립유공자

## 5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 일반공급, 우선공급 가점기준(주거약자 주택, 신혼부부 · 자녀가 만6세이하인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제외)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10년 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②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10년 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③ 공급신청자의 (만)나이	50세 이상	45세이상 50세미만	40세이상 45세미만	35세이상 40세미만	35세미만
④ 공급신청자의 부양가족수(태아 포함, 공급신청자 제외) ※ 하단 부양가족 설명 참조	5인 이상	4인	3인	2인	1인
⑤ 공급신청자의 미성년(만19세 미만, 2002. 8.28.(당일포함) 이후 출생)자녀(태아의 수 포함)의 수	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횟수 (85㎡ 이하 신청자만 해당)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기간(85㎡ 초과 신청자만 해당)	8년이상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⑧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1956. 8.27.이전 출생(당일포함)]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⑨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50%초과 70%이하	70%초과 100%이하	100%초과 120%이하	120%초과 150%이하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 성년(만19세)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로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상계장암지구는 의정부시를 서울시와 동일지역으로 간주함

#### ○ 무주택기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②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은 무주택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만30세미만의 미혼신청자는 무주택기간 점수 없음

#### ○ 부양가족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제외)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분리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단, 만19세 미만[2002. 8.28.이후 출생(당일포함)] 또는 만60세 이상[1961. 8.27.이전 출생(당일포함)]인 사람에 한함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되, 이·재혼인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미성년자녀로 인정
  - **⑥의 가점은 85㎡초과형 주택 입주자 선정시에는 제외**
  - **⑦의 가점은 85㎡이하형 주택 입주자 선정시에는 제외**  
· 우면2지구(114㎡), 양재 212(114㎡) 신청자만 해당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여부**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 **⑨의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50%	1,495,816원	2,281,268원	3,120,260원	3,547,103원	3,547,103원	3,696,824원	3,889,012원	4,081,200원
70%	2,094,142원	3,193,775원	4,368,364원	4,965,944원	4,965,944원	5,175,553원	5,444,616원	5,713,679원
100%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120%	3,589,957원	5,475,042원	7,488,624원	8,513,046원	8,513,046원	8,872,376원	9,333,628원	9,794,879원
150%	4,487,447원	6,843,803원	9,360,780원	10,641,308원	10,641,308원	11,090,471원	11,667,035원	12,243,599원

#### ※ 유의사항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입주자포함)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 감점 산정기준 : 2009.11.3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함

감점 기준	감점 점수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8점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

#### ▶ 상기 가점 및 감점사항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미성년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 6 신청접수 일정

▶ 청약신청 세부일정 및 방법 : 2021.09.15.(수) ~ 09.27.(월) 10:00 ~ 17:00

대상자	접수일정	청약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일반, 주거약자) 1순위</li> <li>- 건설형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서동 721-1(35㎡): 강남, 송파, 서초, 성동, 광진, 용산구 거주자</li> <li>• 우면2지구(49㎡): 서초, 강남, 용산, 동작, 관악구 거주자</li> <li>• 내곡지구(49㎡): 서초, 강남, 용산, 동작, 관악구 거주자</li> </ul> </li> <li>- 건설형 50㎡이상 85㎡이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24회이상 납입한 사람</li> </ul> </li> <li>-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li> </ul> </li> <li>○ 우선공급</li> </ul>	2021.09.15.(수) ~ 2021.09.16.(목) 10:00 ~ 17:00	인터넷청약 www.i-sh.co.kr/a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급(일반, 주거약자) 2순위</li> <li>- 건설형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내 거주하는 사람</li> </ul> </li> <li>- 건설형 50㎡이상 85㎡이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사람으로서 6회이상 납입한 사람</li> </ul> </li> <li>- 85㎡초과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li> </ul>	2021.09.24.(금)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급(일반, 주거약자) 3순위</li> <li>- 건설형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초과 100%이하인 사람</li> <li>- 건설형 50㎡이상 85㎡이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li> </ul> </li> </ul>	2021.09.27.(월) 10:00 ~ 17:00	

- 입주자 선정은 주택유형별로 정한 순위에 따르며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무효처리 됩니다. 청약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순위 및 인정횟수를 반드시 사전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각 순위별 청약 접수결과는 각 순위별 청약접수 종료 익일 09:0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신청취소 및 재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는 신청자격 및 순위의 해당 청약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은 각 순위별 최종 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 청약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7 신청접수 안내

-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청약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가능합니다.
  - 단,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 이상)에 한하여 우편접수 진행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자는 모집 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 신청에 필요한 신청자격, 청약은행, 청약인정 횟수, 신청순위, 월평균소득, 배점세부항목, 우선공급 여부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1-1)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전입일	변동일	등초본상 거주지
2012. 1. 4.	2012. 1. 5.	서울시 구로구 A0파트
2014. 7. 25.	2014. 7. 23.	서울시 강서구 B오피스텔
2015. 12. 14.	2015. 12. 17.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같은 서울시 내에서 다른 자치구로 2014년 7월 25일, 2015년 12월 14일 전입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2년 1월 4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 (예시1-2)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전입일	변동일	등초본상 거주지
2012. 1. 4.	2012. 1. 5.	서울시 구로구 A0파트
2014. 7. 25.	2014. 7. 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2015. 12. 14.	2015. 12. 17.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서울시 외 지역으로 2014년 7월 25일 전입하였다가 2015년 12월 14일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자치구 상관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5년 12월 14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 또는 전출한 경우 재등록, 재전입일부터 기산합니다.

- 접수완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기재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고 신청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우선공급 해당자가 일반공급으로 착오신청시도 변경 불가)
-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 (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당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주택 청약가능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저축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안내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10분에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

- 각 순위별 최종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반드시 청약접수일 이전까지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개인용 공동인증서)하셔야 합니다.
- 본 청약시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주)]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간

- 1순위 : 2021. 9.15.(수) 10:00 ~ 9. 16.(목) 17:00
- 2순위 : 2021. 9.24.(금) 10:00 ~ 17:00
- 3순위 : 2021. 9.27.(월) 10:00 ~ 17:00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로그인(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단지 및 주택형 선택) → 3단계(신청자격 확인) → 4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5단계(가점사항입력) → 6단계(공동인증서 인증확인) →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공동인증서 발급/소지
-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등기우편을 통한 인터넷 청약 대행안내(우편접수)

본 모집공고는 인터넷신청이 원칙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대면)접수는 불가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꼭”필요하므로 미리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청약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은 인터넷/모바일청약만 가능하므로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 이상)에 한하여 우편접수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청약기간 내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우리공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정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본사 방문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 ○ 우편접수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9. 9.(목) ~ 9. 10.(금), 10일(금)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접수인정
- 신청서 접수방법 : 등기우편  
※ 등기우편 외 일반우편/ 택배/ 착불 배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제출주소 :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부 장기전세주택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①신청서 1부, ②개인정보동의서 1부

## ○ 우편접수는 선순위(일반공급-주거약자 1순위 및 우선공급)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주거약자 1순위 및 우선공급: 인터넷접수 가능, 우편접수 가능
- 일반공급-주거약자 2순위 : 인터넷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일반공급-주거약자 3순위 : 인터넷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 소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면적별 선순위 조건 및 소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선순위 조건 및 소득 조건에 관한 사항은 “6. 신청접수 일정 ▣ 청약신청 세부일정 및 방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공사에서 단순 입력하는 ‘신청대행’일 뿐이므로 신청서상 개인정보 오기재, 가점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우편 제출 전 최종 검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

- 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모집세대수의 **상위 150%~300%내외(세부비율 하단 참조)**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하단의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서류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 8.27.)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 ·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1. 10. 14.(목) 14: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에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및 제출서류 관련 안내문 등기우편 발송 예정

###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1. 10. 20.(수) ~ 2021. 10. 22.(금)

###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2021. 10. 22.(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 심사서류 제출주소

-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부 장기전세주택 담당자

###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 8. 27.)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 ① 공통서류(전원 제출)

구비서류	내용	발급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li> <li>-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정자 자필, 인감날인) 받아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li> <li>- 만14세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li> <li>- 만65세이상 노부모부양 가점 신청자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동의(서명)받아 제출</li> <li>※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됩니다.</li> </ul>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li> </ul>	주민센터

## ② 기본서류

구비서류	내용	발급처
임신진단서	<b>&lt;해당자만 제출&gt;</b> • 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b>임신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b> 에 한하며, <b>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 불가</b>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혼인관계증명서	<b>&lt;해당자만 제출&gt;</b> • 동일순위 경쟁 시 가점을 적용받는 공급신청자 중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 가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b>&lt;해당자만 제출&gt;</b>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b>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b>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b>주민등록표등본</b> 제출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장기전세주택 예비가구구성확인서	<b>&lt;해당자만 제출&gt;</b> •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b>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b> 로 당첨 이후 <b>세대 분리 예정인</b> 신청자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순위확인서	<b>&lt;85㎡ 초과 주택 신청자&gt;</b> • 해당 예치금액이 납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치금)의 가입기간 확인	청약홈 홈페이지, 해당은행
중증장애인 확인서	<b>&lt;해당자만 제출&gt;</b> • <b>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 이상 ~ 50㎡ 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b>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③ 주거약자용주택 대상자 증빙서류(대상자만 제출)

주거약자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보훈지청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④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대상자에 한함)

가점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만65세[1956. 8.27.이전 출생(당일포함)]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노부모)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피부양자(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주거약자주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등 •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책정기간 기재)	건강보험공단

⑤ 우선공급 대상자 준비서류

우선공급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노부모 부양자	노부모[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피부양자(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주민센터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3년 이상)인 사람] ※ 제외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캠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 확인서 ※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에 서류 제출 기간 내 확인서 발급 가능여부 미리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사람 •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사람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 확인서 ※ 우선공급 대상여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발급처로 문의	• 기간제, 파견 근로자 : 현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납북피해자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퇴소일부 2년 이내인 사람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퇴소일부 2년 이내인 사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해당 시(구)청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 시장, 구청장의 추천서	거주지 시(구)청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 확인서	거주지 시(구)청
등록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파독근로자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중 간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 되는 사람	• 출입국사실증명서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 요청(개인별 별도 통지)하며 기간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 인정	주민센터

우선공급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해외거주 재외동포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 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거주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서 등</li> </ul> </li> <li>• 귀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취득사실증명서</li> </ul> </li> <li>• 재외국민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구귀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li> </ul> </li> </ul>	법무부 외교부
다자녀 가구	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단, 이·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증명서</li> </ul>	주민센터
3자녀 이상 세대	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단, 이·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증명서</li> </ul>	주민센터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계약자) 중 자격상실자(퇴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li> <li>•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중지, 상실) 통지서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중지일 표시하여 발급)</li> </ul>	주민센터  본인
비닐간이 공작물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li> </ul>	공사양식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이하인 한부모가족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발급)</li> </ul>	주민센터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기본증명서</li> <li>• (해당자)입양관계증명서</li> <li>• (해당자)입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li> </ul>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이전 확인용, 상세증명서로 발급)</li> <li>• 예비신혼부부신청 확인서(공사양식)</li> <li>• 예비신혼부부가구구성 확인서(공사양식)</li> <li>• 위임장(공사양식)</li> <li>- 위임자 : 예비배우자</li> <li>- 수임자 : 대표신청자</li> <li>•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li> <li>•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li> <li>•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li> </ul> 〈입주 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 증명서(상세증명서)</li> </ul> : 입주 시까지 미제출 시 입주불가 당첨 및 계약 무효처리 됨	주민센터  공사양식

- ※ 우선공급 대상자 중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항목 신청자의 자격증명서는 공사에서 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로 의뢰하여 자격 확인 예정 (단, 이외의 기타서류는 서류제출 기간 내 반드시 제출)
- ※ 우선공급 대상자 중 '저소득근로신혼부부'는 공사에서 대상자 여부 직접 확인 예정
- ※ 위 제출서류이외에도 서류심사 상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일부 서류의 경우 발급과정에서 수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준비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 **일반공급**

– **신규공급(강동리엔파크13단지, 보라매자이)**

- \* 기본기준 : 공급호수의 300% 내외
- \* 공급호수가 10호 이하인 경우 : 공급호수의 500% 내외
- \* 공급호수가 5호 이하인 경우 : 공급호수의 600% 내외

– **공가재공급 및 예비입주자**

- \* 기본기준 : 모집세대수의 150% 내외
- \* 모집세대수가 10호 이하인 경우 : 모집세대수의 200% 내외
- \* 모집세대수가 5호 이하인 경우 : 모집세대수의 300% 내외
- ※ 커트라인 내에 동점자인 경우 전원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 **우선공급** : 신청자 수에 따라 탄력적 비율 선정

## 9 동호추첨 및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 ▶ 동호추첨

- 지구단위 공급(세곡지구, 세곡2지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지구, 마곡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 상암2지구, 내곡지구, 우면2지구, 마천지구, 장지지구, 신정3지구, 은평1·2·3지구, 상계장암지구, 신내3지구)의 경우 전산추첨에 의해 지구에 속한 단지 중 하나의 단지에 입주자(혹은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 합니다. [단, 주거약자용주택 신청자는 저층(1~2층)에 배정됨(세곡리엔파크4단지, 서초더샵포레, 서초포레스타2단지 제외)]
- 신규 공급단지(강동리엔파크13, 보라매자이)의 경우 신청유형별로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 시 **공급세대수의 일정비율(200%내외)**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공가 발생 물량을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유효기간 내 2~3개월 주기의 예비당첨자발표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 발표일에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까지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 및 도시계획철거민 등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합니다.

### ▶ 당첨자 발표

- **당첨자발표일 : 2022. 2.15.(화) 14: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 ARS(1600-3456) 당첨자 조회
- 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미제출, 신청자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서류 등의 심사 없이 당첨자(예비입주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시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적합한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신청 시의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이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10 계약 및 구비서류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부, 온라인전자계약  
(정확한 장소 및 방법은 계약안내문 발송 시 확정 통보)

▶ 계약일시 : 2022.03.10.(목) ~ 2022.03.15.(화) 10:00~17:00(단, 점심시간 12:00~13:00)

### ▶ 전자계약 안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입금 후 약 1시간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①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문자 및 ②한국부동산원의 전자계약서 구성완료 안내(문자 또는 어플알림), 즉 2번의 알림 수신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 공사로 내방하여 방문계약을 해야 합니다.

### ▶ 방문계약 안내

- 계약체결은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을 대리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구분	구비서류
당첨자 본인 내방 시	①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② 계약자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③ 계약금 납부영수증
대리인이 내방 시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상기 당첨자 본인 내방 시 구비서류 외 ① 계약자 인감증명서(계약자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② 계약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날인)

※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 취소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입주자포함)된 자는 입주 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
- 당첨자 발표이전에 분양권 등의 소유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 세대구성, 서울특별시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 당첨(예비입주자)된 자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당첨(예비입주자)자, 추가 심사대상자 등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등과 관련하여 감점되어 (예비)당첨 최저 점수 미만인 경우(당첨자는 예비자라도 미공급)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후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해당순위 신청접수일이 아닌 날짜에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관계법령 위반 등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 11 •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li> <li>•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40㎡초과 임대주택 신청자의 경우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미만인 주택도 단독세대주로 신청 가능)</li> <li>•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 시 전세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 <b>(갱신시)</b>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임대보증금이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 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th> <th>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00%</td> <td>105%</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05%</td> <td>110%</td> </tr> <tr> <td>30%초과 5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body> </table>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이하	100%	105%	10%초과 30%이하	105%	110%	30%초과 50%이하	110%	120%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이하	100%	105%												
10%초과 30%이하	105%	110%													
30%초과 50%이하	110%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유지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해당주택에 실제 입주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 및 우편접수 등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신청 할 경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li><b>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 공급 원칙</b>에 따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①청약 신청서 ‘현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분리세대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li> </ul>
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무효 처리합니다.</li> <li>신청 이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정정은 불가하며, <b>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b>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b>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b> 바랍니다.</li> <li>신청 이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은 불가하며,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신청 이후 입주자격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계속거주, 단독세대주, 부양가족주 등 신청자격 또는 가점사항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따라 가점 조정 및 걸격될 수 있습니다.</li> </ul>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미제출, 신청자격 걸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서류 등의 심사 없이 당첨자(예비입주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시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적합한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li> <li>주소, 연락처 변경, 개명 시에는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li> <li>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2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미계약, 미신청 동호수 발생등에 의한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li> <li>소명기한이 계약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약금은 납부하되 계약은 소명완료 후 체결할 수 있습니다.</li> <li>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li>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ul>
당첨 및 계약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 발표 전 · 후에 주택소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부동산 및 차량소유, 소득입증, 가점관련 서류, 심사서류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걸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li> <li>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b>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b>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li> <li>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 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 세대구성, 서울시 계속거주,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당첨자 발표이전에 분양권 등의 소유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태아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로 인정받아 당첨자(예비입주자)가 된 자가 입주 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의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임차권의 양도·전대·알선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이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li> <li>•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li> <li>•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따릅니다.</li> </ul>

## 12 ● 임대신청 문의

### ▶ 청약관련 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12:00~13:00)
- 내방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부 09:00~18:00(단, 점심시간 12:00~13:00)

# 13 ● 임대주택 위치안내

- 금회 공급단지는 현장 여건 등에 의해 견본주택을 미운영합니다.
- 다만, 현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임대주택 단지 정보** 및 **전자팸플릿**을 공개하오니 하단의 검색 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재공급 공급단지에 대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이후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검색 방법

**■ 임대주택 단지 정보**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접속 → 청약정보 → 단지별 임대정보 → 주택임대 → 유형“장기전세주택”선택 → 지역 자치구 선택 → 단지명 선택

**■ 전자팸플릿**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접속 → 청약정보 메뉴상 전자팸플릿 → 단지명 검색

구분	강동리엔파크 13단지	보라매자이
위 치	강동구 상일동	동작구 신대방동
교통편	강일역(5호선) 3번출구 3323번 버스 승차 '강동리엔파크 13, 14단지' 하차 도보 1분	신대방삼거리역(7호선) 2번출구 도보 2분
약 도		

자치구	지구명	단지명	소재지 주소
강남구	세곡지구	강남데시앙파크	강남구 현릉로590길 63
		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	강남구 현릉로590길 10
		세곡리엔파크3단지	강남구 현릉로590길 11
		세곡리엔파크4단지	강남구 현릉로590길 88
	세곡2지구	래미안포레(2-3)	강남구 밤고개로21길 25
		강남한양수자인(2-4)	강남구 자곡로 260
		한신희플러스6(2-6)	강남구 밤고개로26길 50
		한신희플러스8(2-8)	강남구 밤고개로27길 20
	-	수서동 721-1 장기전세주택	강남구 광평로60길 32
	-	개나리에스케이뷰	강남구 역삼로 315-1
	-	래미안그레이튼	강남구 도곡로43길 20
	-	래미안도곡카운티	강남구 도곡로 320
-	역삼자이	강남구 언주로 420	
-	테헤란아이파크	강남구 테헤란로52길 16	
강동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리버파크2	강동구 아리수로97길 68
		강일리버파크3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0
		강일리버파크4	강동구 아리수로97길 19
		강일리버파크6	강동구 아리수로94길 19
		강일리버파크9	강동구 고덕로97길 29
		강일리버파크10	강동구 고덕로97길 20
	강일2지구	고덕리엔파크1단지	강동구 상일로 152
		고덕리엔파크2단지	강동구 고덕로 427
		고덕리엔파크3단지	강동구 상일로 74
	고덕강일2지구	강동리버스트4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110
		강동리버스트6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77
		강동리버스트7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70
		강동리버스트8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나길 88
	-	암사힐스테이트	강동구 올림픽로91길 30
-	올림픽파크한양수자인	강동구 성내로 80	
강서구	마곡지구	마곡지구2	강서구 마곡서1로 146
		마곡지구3	강서구 마곡서1로 132
		마곡지구4	강서구 마곡서로 175
		마곡지구6	강서구 마곡서1로 100
		마곡지구7	강서구 마곡서로 133
		마곡지구8	강서구 마곡서1로 81
		마곡지구10	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마곡지구11	강서구 공항대로 124
		마곡지구12	강서구 공항대로 140
		마곡지구14	강서구 마곡중앙로 33
		마곡지구15	강서구 마곡중앙로 36
	-	발산3단지	강서구 수명로1길 110
	-	강서한강자이	강서구 양천로55길 55
	-	마곡푸르지오	강서구 방화대로34길 88
-	보람더하임	강서구 양천로 666	

자치구	지구명	단지명	소재지 주소
광진구	-	강변SK뷰	광진구 아차산로 431
	-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	광진구 아차산로 345
	-	한라녹턴	광진구 영화사로16길 43
구로구	천왕지구	천왕이펜하우스3	구로구 천왕로 56
		천왕이펜하우스4	구로구 천왕로 29
		천왕이펜하우스5	구로구 천왕로 10
		천왕이펜하우스6	구로구 천왕로 9
	천왕2지구	천왕2지구1단지	구로구 오류로 30
		천왕2지구2단지	구로구 오리로 1102-10
	-	개봉푸르지오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
	-	고척유진마젤란아파트	구로구 경인로47길 128
-	온수힐스테이트	구로구 부일로9길 127	
금천구	-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	금천구 벚꽃로 40
	-	백운한비치	금천구 금하로23길 52
동대문구	-	신이문어울림	동대문구 신이문로 9
동작구	-	두산위브(사당)	동작구 사당로13길 31
	-	상도동호성해링턴플레이스	동작구 상도로 207
	-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동작구 상도로30길 40
마포구	상암2지구	상암월드컵파크9	마포구 월드컵북로 501
		상암월드컵파크10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36
		상암월드컵파크11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37
-	망원동 동원데자뷰	마포구 방울내로9안길 57	
서대문구	-	동원베네스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1길 65
	-	홍제금호어울림	서대문구 모래내로 411
서초구	우면2지구	서초네이처힐1	서초구 형촌길 35
		서초네이처힐2	서초구 형촌길 15
		서초네이처힐3	서초구 태봉로2길 60
		서초네이처힐5	서초구 태봉로2길 5
	내곡지구	서초더샵포레	서초구 현릉로8길 58
		서초포레스타2	서초구 현릉로8길 45
		서초포레스타3	서초구 현릉로8길 22
		서초포레스타5	서초구 청계산로7길 43
		서초포레스타6	서초구 청계산로9길 1-12
		서초포레스타7	서초구 청계산로11길 7-12
		-	양재동 102번지 장기전세아파트
	-	양재동212 장기전세아파트	서초구 매현로16길 40
	-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서초구 잠원로8길 35
	-	래미안퍼스티지	서초구 반포대로 275
	-	반포리체	서초구 고무래로 35
	-	반포자이	서초구 신반포로 270
	-	서초두산위브트레지움	서초구 서운로 194
	-	서초푸르지오써밋	서초구 서운로 201
-	아크로리버파크 반포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9	
성북구	-	동일하이빌뉴시티(신월곡)	성북구 종암로 167
	-	래미안센터피스아파트	성북구 송인로 50

자치구	지구명	단지명	소재지 주소
송파구	마천지구	송파파크데일1	송파구 성내천로37길 37
		송파파크데일2	송파구 성내천로47길 38
	장지지구	송파파인타운1단지	송파구 충민로 188
		송파파인타운6단지	송파구 충민로6길 14
	-	위례포레샤인23단지	송파구 위례순환로 477
양천구	신정3지구	신정이펜하우스1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99
		신정이펜하우스2단지	양천구 신정이펜2로 55
		신정이펜하우스3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50
		신정이펜하우스4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51
	-	신정4보금자리주택	양천구 신정로 110 신정숲속마을
	-	동원데자뷰	양천구 오목로 76-2
	-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양천구 오목로 354
	-	수명산롯데캐슬	양천구 월정로 303
-	양천롯데캐슬	양천구 오목로5길 19	
영등포구	-	문래동모아미래도	영등포구 선유로9나길 5
은평구	은평1지구	은평1-2	은평구 진관4로 37
		은평1-3	은평구 진관4로 47
		은평1-4	은평구 진관4로 77
		은평1-5	은평구 진관4로 87
		은평1-7	은평구 진관4로 100
		은평1-8	은평구 진관4로 78-7
		은평1-9	은평구 진관4로 78-8
		은평1-10	은평구 진관4로 48-17
	은평1-11	은평구 진관4로 48-8	
	은평2지구	은평2-1	은평구 진관1로 21-10
		은평2-2	은평구 진관2로 60
		은평2-3	은평구 진관2로 90
		은평2-4	은평구 진관2로 67
		은평2-5	은평구 진관2로 77
		은평2-11	은평구 진관1로 55
		은평2-12	은평구 진관1로 21-9
	은평3지구	은평3-3	은평구 진관3로 67
		은평3-4	은평구 진관3로 15-35
		은평3-5	은평구 북한산로 2
	-	은평3-12	은평구 연서로46길 7
	-	은평3-10	은평구 진관1로 77-8
-	힐스테이트백련산4차	은평구 백련산로 37	
의정부시	상계장암지구	수락리버시티1단지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51
		수락리버시티2단지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52
중랑구	신내3지구	우디안1단지(3-1)	중랑구 신내역로1길 85
		데시앙포레(3-2)	중랑구 신내역로 165
	-	신내데시앙	중랑구 용마산로 669
	-	e편한세상화랑대	중랑구 속선옹주로 45
	-	면목2코오롱하늘채	중랑구 용마산로 210

**별표1**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 **검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
  
  - **검색범위**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2.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분양권등 매수한 경우** :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잔금지급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 부터 적용
    - ※ **준공후 등기처리 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명인정 불가)
  8. 소형·저가주택(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85㎡초과 주택 신청자에 한함)
  9.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0. 매매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11.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별표2

## ▶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 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 산재보험, 2) 고용보험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 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 훈령 · 고시 또는 지침에 의하며, 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기간내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에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 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공단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개인민원→조회/발급→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소득 중복	반영(높은 금액 반영)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별표3**

## 우편접수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 작성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공고문에 첨부된 아래 2가지 양식에 **내용작성** → **공고문 절취** → **공사 제출**

- ① **장기전세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1부** [일반(일반, 우선공급) / 주거약자주택 신청용 중 택1]
-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자필서명 필요, **앞뒤 총 3곳**)

■ **등기우편 접수기간 : 2021. 9. 9.(목) ~ 9. 10.(금), 10일(금)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인정**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등기우편 외 일반우편/택배/착불배송 등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출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1층 공공주택부 장기전세주택 담당자**

- 우편접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공사에서 **단순 인터넷 입력대행**하는 형태로,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신청서 내용누락 및 오기재 등의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일반공급·주거약자 1순위 및 우선공급 신청자만 가능하며, 소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하단의 **면적별 순위 조건 및 소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1순위 조건]**

- **건설형** 전용면적 50㎡이하 주택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 중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 수서동 721-1(35㎡): 강남, 송파, 서초, 성동, 광진, 용산구 거주자
- 우면2지구(49㎡): 서초, 강남, 용산, 동작, 관악구 거주자
- 내곡지구(49㎡): 서초, 강남, 용산, 동작, 관악구 거주자

- **건설형** 전용면적 50㎡초과 85㎡이하 주택 /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85㎡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소득 조건]**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사람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주택: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인 사람

-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사람

- 신청서에 **인터넷 청약대행 시 필수 입력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하여 결격 처리되므로**, 등기우편 제출 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단지 및 면적, 소득체크, 청약관련 기재사항 등)
- 신청서는 반드시 **일반(일반, 우선공급) 신청서 또는 주거약자주택 신청서 중 1부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두 종류의 신청서 모두 제출 시 일반주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약이 진행됩니다.
- 첨부된 신청서 예시자료 및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착오기재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이후 신청단지 및 신청유형에 대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오기재시 납입인정회차가 0회처리** 되오니,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배송 중 분실, 도착지연 등을 대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발송한 **등기우편의 등기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예시

일반(일반, 우선공급) 신청용

( 단지명 ) 단지 장기전세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저층신청 ○

1. 신청면적 : 전용( 신청할 면적 기재 ) m<sup>2</sup>

· 단독세대주는 전용40m<sup>2</sup>미만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증장애인인 단독세대주는 전용50m<sup>2</sup>미만까지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확인서 필요

2. 일반공급 신청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우선공급(해당자격 : \_\_\_\_\_ ) (장애인: 중증  경증 ) (신혼부부: 1순위  2순위 )

- ※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산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 ※ 신혼부부 우선공급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건설형 50m<sup>2</sup>이하 1순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 중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공고문 참조)에 거주하는 사람
- 건설형 50m<sup>2</sup>초과 85m<sup>2</sup>이하 /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85m<sup>2</sup>이하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 85m<sup>2</sup>초과 주택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1. 신혼부부만 작성 -> 현 배우자와의 혼인일: \_\_\_\_\_ / 가장 어린자녀의 생년월일: \_\_\_\_\_ / 예비신혼부부 여부

2-2. 만6세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작성 -> 등본에 등재된 가장 어린자녀의 생년월일: \_\_\_\_\_

3.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50%이하 <input type="checkbox"/>	50%초과 70%이하 <input checked="" type="checkbox"/>	70%초과 100%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초과 120%이하 <input type="checkbox"/>	120%초과 150%이하 <input type="checkbox"/>
--------------------------------	---	---------------------------------------	--	--

- 60m<sup>2</sup>이하 주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사람
- 60m<sup>2</sup>초과 85m<sup>2</sup>이하 주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인 사람
- 85m<sup>2</sup>초과 주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사람

3-1.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중 2인가구(태아포함) 해당자만 작성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60%이하 해당 여부

4.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이며 분리예정 세대인 경우 체크

5. 청약관련 기재사항 : \_\_\_\_\_ 우리 \_\_\_\_\_ 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전용면적 85m <sup>2</sup> 이하	청약납입 횟수	24 회	전용면적 85m <sup>2</sup> 초과	청약가입일	2018년 11월 15일
				청약납입금액	원

6. 신청자 인적사항 \* 분리배우자도 오른쪽 체크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홍길동	8	7	1	2	1	0	-	1	2	3	4	5	6	7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없음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분리배우자
배우자	김을동	8	6	1	2	1	0	-	2	0	1	2	3	4	5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합한 사람 신청불가(배우자가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인 경우 등)

7.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가점기준 \* 신청자 기준으로 작성

① 서울시전입일(만19세 이후)	2007	년	1	월	1	일		
② 무주택기간(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만	3	년)					
③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④ 부양가족수	신청자 본인 및 태아를 제외한 수	(	3	)명				입신여부 <input type="checkbox"/> 입양여부 <input type="checkbox"/> (* 해당자만 선택)
	태아의 수	(	0	)명				
⑤ 미성년자녀수	신청자 본인 및 태아를 제외한 수	(	1	)명				
	태아의 수	(	0	)명				

8. 신청인주소(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9. 핸드폰(연락가능) 번호 : 010 - 1234 - 5677

※ 대리신청 시 작성 \* 대리신청 시에만 작성 요함

대리신청인 : (인) 생년월일 : \_\_\_\_\_

신청인 본인은 신청자격, 입주자선정기준 등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착오기재 등의 경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1년 9월 13일

신청인: 홍길동 (인장 또는 서명) \* 반드시 자필서명

신청서 예시

## 주거약자용주택 신청용

### ( 단지명 ) 단지 장기전세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세대분리 예정세대

**0. 신청자격** (해당 사항에 체크,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가능)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input type="checkbox"/>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input type="checkbox"/>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input type="checkbox"/>

**1. 신청면적 : 전용( 신청할 면적 기재 ) m<sup>2</sup>**

· 단독세대주는 전용40m<sup>2</sup>미만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증장애인인 단독세대주는 전용50m<sup>2</sup>미만까지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확인서 필요)

**2. 신청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우편접수는 1순위자만 신청가능함**

- 50m<sup>2</sup>이하 1순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 중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공고문 참조)에 거주하는 사람
- 50m<sup>2</sup>초과 85m<sup>2</sup>이하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3. 신청자 인적사항** \* 분리배우자도 오른쪽 체크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홍길동	8	7	1	2	1	0	-	1	2	3	4	5	6	7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없음
배우자	김을동	8	6	1	2	1	0	-	2	0	1	2	3	4	5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분리배우자

**4. 신청인주소 (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5. 핸드폰번호 : 010 - 1234 - 5677**

**6. 신청인 입력사항**

**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50%이하 <input type="checkbox"/>	50%초과 70%이하 <input checked="" type="checkbox"/>	70%초과 100%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초과 120%이하 <input type="checkbox"/>	120%초과 150%이하 <input type="checkbox"/>
--------------------------------	---	---------------------------------------	--	--

- 60m<sup>2</sup>이하 주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사람
- 60m<sup>2</sup>초과 85m<sup>2</sup>이하 주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인 사람

**나.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

① 부양가족수	신청자 본인 및 태아를 제외한 수	( 2 )명	임신여부 <input type="checkbox"/>
	태아의 수	( 0 )명	입양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자만 선택)		
② 서울시전입일(서울시 연속거주 시작일자, 만19세 이후)	2007 년 1 월 1 일		
③ 사회취약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전원에 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및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에 해당]	<input type="checkbox"/>	
④ 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횟수 : (은행명 : 우리은행 )	60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48회이상 60회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36회이상 48회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장애인[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전원에 해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경증장애인(장애등급 4~6급) <input type="checkbox"/>			

■ 대리신청인 : (인) 생년월일 :  \* 대리신청 시에만 작성

신청인 본인은 신청자격, 입주자선정기준 등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착오기재 등의 경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1 년 9 월 13 일

신청인: 홍길동 (인장 또는 서명) \* 반드시 자필서명



## 신청서

## 일반(일반, 우선공급) 신청용

## ( ) 단지 장기전세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1. 신청면적 : 전용 \_\_\_\_\_ m<sup>2</sup>저층신청 

2. 일반공급 신청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우선공급(해당자격 : \_\_\_\_\_) (장애인: 중증  경증 )(신혼부부: 1순위  2순위 

- ※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 ※ 신혼부부 우선공급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1. 신혼부부만 작성 -> 현 배우자와의 혼인일: \_\_\_\_\_ / 가장 어린자녀의 생년월일: \_\_\_\_\_ / 예비신혼부부 여부 

2-2. 만6세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작성 -&gt; 등본에 등재된 가장 어린자녀의 생년월일: \_\_\_\_\_

3.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50%이하 <input type="checkbox"/>	50%초과 70%이하 <input type="checkbox"/>	70%초과 100%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초과 120%이하 <input type="checkbox"/>	120%초과 150%이하 <input type="checkbox"/>
--------------------------------	--------------------------------------	---------------------------------------	--	--

3-1.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중 2인가구(태아포함) 해당자만 작성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60%이하 해당 여부 4.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이며 분리예정 세대인 경우 체크 5. 청약관련 기재사항 : \_\_\_\_\_ 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납입 횟수	회	전용면적 85㎡ 초과	청약가입일	년	월	일
				청약납입금액			원

6. 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없음		
(예비)배우자		-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분리배우자		

7.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가점기준

① 서울시전입일(만19세 이후)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② 무주택기간(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만 _____ 년)			
③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④ 부양가족수	신청자 본인 및 태아를 제외한 수	( )명	<input type="checkbox"/> 임신여부 <input type="checkbox"/> 입양여부 (* 해당자만 선택)
	태아의 수	( )명	
⑤ 미성년자녀수	신청자 본인 및 태아를 제외한 수	( )명	
	태아의 수	( )명	

8. 신청인주소(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9. 핸드폰(연락가능) 번호 :

※ 대리신청 시 작성

대리신청인 : \_\_\_\_\_ (인) 생년월일 : \_\_\_\_\_

신청인 본인은 신청자격, 입주자선정기준 등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착오기재 등의 경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신청서

주거약자용주택 신청용

( ) 단지 장기전세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세대분리 예정세대

0. 신청자격 (해당 사항에 체크,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가능)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input type="checkbox"/>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input type="checkbox"/>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input type="checkbox"/>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input type="checkbox"/>

1. 신청면적 : 전용 \_\_\_\_\_ m<sup>2</sup>

2. 신청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3. 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없음	
배우자		-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분리배우자	

4. 신청인주소 (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5. 핸드폰번호 :

6. 신청인 입력사항

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50%이하 <input type="checkbox"/>	50%초과 70%이하 <input type="checkbox"/>	70%초과 100%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초과 120%이하 <input type="checkbox"/>	120%초과 150%이하 <input type="checkbox"/>
--------------------------------	--------------------------------------	---------------------------------------	--	--

나.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

① 부양가족수	신청자 본인 및 태아를 제외한 수	( )명	임신여부 <input type="checkbox"/> 입양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자만 선택)
	태아의 수	( )명	
② 서울시전입일(서울시 연속거주 시작일자, 만19세 이후)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③ 사회취약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전원에 해당]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및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에 해당]	<input type="checkbox"/>	
④ 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횟수 : _____ (은행명 : _____)	60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48회이상 60회 미만 <input type="checkbox"/>	36회이상 48회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장애인[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전원에 해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 경증장애인(장애등급 4~6급) <input type="checkbox"/>		

■ 대리신청인 : (인) 생년월일 : \_\_\_\_\_

신청인 본인은 신청자격, 입주자선정기준 등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착오기재 등의 경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 \_\_\_\_\_ (인장 또는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임대청약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력하시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청약관련 사항
-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 IP주소, 접속로그, 청약일시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정보주체의 청약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청약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청약도 철회한 것으로 처리),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사업 폐지 등의 사유발생시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나의 청약내역" 메뉴에서 회원 본인의 과거 청약내역 확인하는 서비스는 포함) 이 달성된 후 또는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후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합니다.
휴대전화번호, 주소	- 청약관련 전달사항 통보 및 보완자료 요청 경로 확보	
청약관련사항	- 배우자정보 및 청약관련저축 등의 가점항목으로 청약 자격 확인에 이용 -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IP주소, 접속로그, 청약일시	- 청약신청 확인용으로 이용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란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야만 청약 가능)

동의인 (청약인) :

(서명 또는 인)

##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아래의 경우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은 하지 않습니다. 청약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지정합니다.

####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확인 시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서울특별시	주택소유현황, 세대원 정보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공급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후,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주민센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소(세대주),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세대주), 전입일/변동일(세대주 및 세대원),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재외국민 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동거인(세대원),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세대주), 전체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당첨 내역 및 납입회차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별표2**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청약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서명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야만 청약 가능)

동의인 (청약인) :

(서명 또는 인)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아래의 경우 고유식별정보 처리(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를 하고 있으며 청약 신청시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지정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회원 식별 및 인증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청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수집·이용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청약업무 수행 -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나의 청약내역" 메뉴에서 회원 본인의 과거 청약내역 확인하는 서비스는 포함)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청약 신청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확인 시 제3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서울특별시	주택소유현황, 세대원 정보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공급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후,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주민센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소(세대주),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세대주), 전입일/변동일(세대주 및 세대원),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재외국민 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동거인(세대원),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세대주), 전체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당첨 내역 및 납입회차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명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야만 청약 가능)

동의인 (청약인) :

(서명 또는 인)

## 단지별 유의사항(공통)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지하철, 하천, 어린이공원, 도서관, 공공기관, 학교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공공시설의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음.
- 팸플릿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지설계, 동별설계, 세대내부설계, ·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지구 내 · 외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 및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 · 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동일 타입이라도 층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내 마감재(문틀, 문틀, 아트월, 몰딩)등 시공 구간에 시공 특성상 타카핀이 사용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설계 배치 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기 바람.(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일부세대는 수거함과 거리가 다소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 단지 내 보도는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놀이터, 관리동 및 경로당,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 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기계, 전기 시설관련 급배기구, 지하주차장 환기탑(DRY AREA),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주차관제용 출차주의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동별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 소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대피공간, 실외기실, 세탁기 설치위치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배수관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 겸용관이 시공상 오차 및 건축구조에 따라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지역난방요금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수 있음.
- 복도와 발코니 새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외부 발코니 새시 설치로 발코니 창, 콘크리트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되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우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음.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거나 인접한 공기세대가 있을 경우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평형 및 세대 타입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된 경우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발코니 바닥과 실외기용 시스템 루버와 단차가 있어(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원활하게 환기 시키기 위해) 실외기 하부에 높임 발판을 설치해야 할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가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전기 세대분전반 및 통신 세대통합단자함은 신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동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법상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세대 내 · 외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단지내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정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등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이설, 증설, 변경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레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 및 1층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어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 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어 굴절구간이 있음.
- 지하주차장 차량통행로 최소 유효 높이에 따라 계획되어 일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 및 주차가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녹지 공간 확보 등)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어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해야 함.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옥상 출입구, 재활용품보관소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물(변압기, 패드스위치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하단으로 지나갈 수 있음.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층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해당시설 및 주변 동에 소음 및 열기가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승강기 인접세대는 승강기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으로 불편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발코니 미니태양광 설치로 인한 아파트 외부미관이 다소 저해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게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정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 규격, 수량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타입이라도 발코니에 위치한 기둥의 모양, 드레인 위치, 배관 및 수전 위치, 점검구 위치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시공사가 달라 타입 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조명기구,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내부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도면치수와 안목치수는 마감재 및 시공오차에 따라 실벽 실측치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부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이 다소 넓거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으로 관리비 등이 다소 높을 수 있음.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당해 지구·단지를 방문 또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어 소음·조망·일조·도로·환경저해·주변 혐오시설 유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장기전세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고덕강일지구 13단지

### ▶ 단지 주변여건

- 본 사업부지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지구 내 위치하며 서울도심 동측 약 18KM 지점, 서울시와 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반경 약 1.2km부근에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상기 거리는 도보 기준임)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여러 개의 건설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빛공해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보행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 도로(중로(집)1-9, 중로(집)1-8) 주변 및 12단지 아파트 예정구역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소음 및 진동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 및 공터가 위치하고 있어 여름에 벌레가 다수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 자족시설(지식산업센터)이 위치해 있어 일부 세대에서 소음·빛공해·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덕강일지구 내외 인접지역에 자원순환센터(폐기물처리시설), 열병합 발전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지하철 5호선 철도시설(하남선 신설공사 포함), 하남비행장 등이 위치·계획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입지여건 (향후 변경사항 포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동 시설물들로 인한 소음·진동, 악취, 대기질 등 환경영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대시설 현황

구분	위치	주요 시설	비고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1301동 1F	MDF실, 방재실 등
	근로자휴게실	1306동 B1F	근로자 휴게실(남, 여)
	용역창고	1306동 B1F	용역창고
	경비실#1	1310동 B1F (주출입구 우측)	주출입구 경비실
	경비실#2	1309동 B1F (부출입구 우측)	부출입구 경비실
	무인택배보관소	1304동 1F 인근 / 1308동 1F 인근 / 1310동 B1F 인근	무인택배보관소 3개소
	쓰레기보관소	1301동 1F 인근 / 1302동 1F 인근 / 1307동 1F 인근 1310동 1F 인근 / 1309동 1F 인근	쓰레기보관소 5개소
	자전거주차장	각동 1F 필로티	자전거 보관대

구분	위치	주요 시설	비고
주민 공동시설	경로당	1307동 1F	할아버지, 할머니방 등
	어린이집	1305동 1F	보육실 등
	작은도서관	1302동 1F	어린이, 일반도서관 등
	어린이놀이터#1,#2	1304동 인근 / 1306동 인근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1303동 인근	실외 운동기구 등
	휘트니스센터	1301동 1F	GX룸, 락커룸 등
	게스트하우스	1303동 1F	거실, 주방 등
	공유주방	1306동 B1F (테크층)	싱크대 등
	바이크스테이션#1,#2	1302동 1F / 1310동 B1F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회의실	1301동 1F	입주자회의실 등
	독서실	1302동 1F	독서실 등
	농기구보관소	1306동 B1F (테크층)	농기구보관소 등
	사회적기업	1310동 B1F	사회적기업#1, #2
	근린생활시설	1310동 B1F	근린생활시설#1,#2,#3,#4,#5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면적 및 실 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등에 내부시설(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부 여건 및 공용부 관련 유의사항**

- 단지 내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단지 내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 일부 세대는 근린생활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되어 소음·빛공해·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 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에 맞게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출차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불빛 및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를 활용한 사다리차 사용 시 관리사무소와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상고저차 해소 및 녹지공간 확보 등)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어 반드시 여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범용 CCTV의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단지출입구, 승강장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에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아파트 복도 및 비상계단 등에 설치된 겨울철 동결, 동파에 취약한 배관에는 열선이 설치되어 가동 시 공동전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복도, 계단실 등은 습기 및 외기 온도 차이로 인해 부득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인 환기를 통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편의를 고려하여 지하1층 아파트 주동 출입구 근처에 장애인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일부구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간섭부위 등 차량동선이 교차되는 부위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주출입구 인근(1301동, 1304동, 1305동, 1306동, 1310동)과 차량 부출입구 인근(1308동, 1309동)은 차량 진출입시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눈부심, 경보등 소음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출입구 인근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주변에는 일부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저층세대는 소음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3m로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택배차량,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차량 등의 출입이 제한되므로 부득이할 시 관리사무소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화물차, 대형SUV, 소형 컨테이너 트럭, 소형버스,

이삿짐 차량 등)

-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 사이에는 전실이 없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지하 동 출입문은 방화구획을 위해 방화성능을 만족하는 여닫이문으로 설치되어 입주자의 출입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302동, 1310동 출입구 인근 바이크스테이션 및 각 동 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일부 세대는 통행 및 시설이용에 의한 소음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1304동, 1308동, 1310동 1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 예정이며 인접한 일부 세대는 통행 및 시설이용에 의한 소음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쓰레기보관소는 1301동, 1302동, 1307동, 1309동, 1310동 인근 1층에 1개소씩 총 5개소에 설치 예정이며, 이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시설 주변동은 조망권 및 환경권에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설치된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등으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파트 일부세대는 쓰레기보관소와 다소 거리가 멀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는 계단식 아파트인 경우 발코니에, 복도식 아파트인 경우 복도에 설치됩니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단지 내 공공공간과 인접세대는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벽 부위의 경우 1301동, 1302동, 1304동, 1305동, 1307동, 1309동은 1층 일부에, 1310동은 지하층 일부에 치장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고 1306동, 1308동은 3층까지 일부 석재뿔칠로 마감되며 이외에는 외부용 수성페인트로 마감되어질 계획이며, 상기 사항은 건물 외관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301동, 1302동, 1303동, 1304동, 1309동, 1310동은 복도에 우수드레인 설치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310동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가동 시 상부층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301동, 1302동, 1305동, 1307동 2층 일부 세대의 경우, 세대 창호 전면에 1층 부대시설의 옥상공간이 위치하여 소음·빛공해(반사)·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모든 승강기는 비상용, 장애자용, 화물겸용으로 설치되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303동, 1304동, 1305동, 1306동, 1307동, 1308동, 1309동, 1310동 옥상에는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배선을 위한 케이블덕트 시설이 옥상 바닥에 노출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계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폐쇄되어 있으나 화재 시 개방됩니다.
-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 사이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상시 닫힌 구조로 설치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계단실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상시 닫힌 구조로 설치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 및 지하시설물, 부대시설(통합커뮤니티센터,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등)에는 주민공동을 위한 D/A가 설치되며, 일부 D/A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에 따라 생활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별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부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이동통신사업자 소관사항으로 입주 시 설치되지 않아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입주 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여야 함.)
- 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설치 및 우수저류조 인공지반 배수공법이 적용되어 펌프 등 시설물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이 방해되거나 눈부심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지하2층 주차장은 전체 동에서 접근이 가능하나 지하1층 주차장은 1306동, 1307동, 1308동, 1309동, 1310동에서만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동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파 TV 공청 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1306동 옥상층에 설치되어 있음
- 1309동 1층세대 (59C TYPE)의 경우 전면에 휴게시설이 존치하고 있어 조망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량을 위한 도로로 설계되었으며 비상차량 외 이용이 부득이할 시 관리사무소와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덕강일 지구 단지 계획상 단지 출입구에 별도의 문주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유의사항

- 세대내 동체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 마감재(문선, 문틀, 아트월, 몰딩)등 시공 구간에 시공 특성상 타카핀이 사용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벽체 벽지 중앙부가 일부 들떠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시공(봉투 바름)입니다.
- 세대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며, 동절기 온도차에 의한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자주 환기시키거나 습기가 실내에서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장수명주택 구조에 따라 세대 내부에 일부 기둥이 돌출되어 있으며, 서비스면적인 발코니에 설치되는 기둥의 경우 동일 타입이라도 세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의 경우 차량 및 보행자 통행으로 인한 소음·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생활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실내습도 등에 의하여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잦은 환기를 요합니다.
- 세대 욕실 양변기는 화장실 문의 크기 및 개폐 여유폭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임의로 크기를 변경하여 교체 시공 시 문이 안열리거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 바닥에는 마루가 설치되지 않으며 도장 마감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최종 마감재(타일, 바닥재, 벽지 등)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①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②고정형 가구 상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신발장, 붙박이장) ③주방가구와 접하는 상하부,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④주방 상부장 상부,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측면,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⑤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전기 세대분전반 및 통신 세대통합단자함은 신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점검 시 신발 등을 꺼내야 하므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난방 열원은 지역난방이며, 세대 주방에 가스공급은 도시가스로 공급됩니다.
- 세대 바닥 난방 및 급탕은 지역난방 공급되어 열공급 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난방열량계, 급수, 급탕메타기(전세대)는 PD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급수, 급탕, 난방 공용설비 배관 점검용 PD에는 총별로 점검용 점검구가 노출로 설치되어 있어 유지관리 및 미관저해, 소음발생 등에 따른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강홀 좌우측 PD에 설치)
- 세대 욕실 및 주방 천정 내부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내시경홀(스리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 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 급탕분배기는 욕실 천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발코니에 우수배관 및 배수배관 설치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 위생도기류는 세면기와 양변기만 설치되며, 샤워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세면기겸용샤워수전이 설치되어 생활불편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완강기는 3~10층 세대에만 발코니에 설치됩니다.
- 욕조설치 최하층 세대(또는 필로티 상부 세대)는 유지관리상 트랩이 설치되지 않아 냄새가 역류할 수 있으므로, 욕조 미사용 시에는 욕조마개를 막아서 냄새를 역류 방지하여야 하는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시공된 배수통기관 등으로 세대별 우수, 배수 설비의 수량과 위치가 일부 다를 수 있으며 세탁기 수전과 간섭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사이 벽체는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세대 간 진동, 소음 전달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에는 환기설비 장치 및 배관의 설치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타입 별로 환기설비가 설치된 발코니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승강기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부정지 층은 정지버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승강기 및 각종 기계환기 공조설비와 인접세대는 시설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는 발코니 등에 노출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상부장의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배관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전기, 지역난방 열량계 및 급수, 급탕, 가스 계량기는 원격검침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환기는 기계환기설비(전열교환기)가 발코니 천정에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 될 수 있고,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전기료 및 필터 교체비용이 발생합니다.
- 세대 주방후드는 공용 배기시스템을 적용 설치되어 있어(렌지후드에 배기팬이 설치되지 않음) 유지관리 시 생활의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위치에 따라 승강기 운행,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장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각 동 최상층 세대는 옥상에 설치되는 주방공용배기팬 작동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 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의 경우 거실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설치를 전제로 냉매배관이 매립되어 있으며 형식이 변경될 경우 냉매배관 규격이 맞지 않을 수 있어 에어컨 설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뺌집)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발코니에 지정된 공간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며(발코니 외부에는 설치공간을 제공하지 않음), 에어컨 가동 시 루버창을 개방 후 사용하여야 하고, 소음 진동이 세대 내부로 전달 될 수 있고 조망권, 일조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시 실측을 통한 적정 규격의 실외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발코니 바닥과 실외기용 루버와 단차가 있어(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원활하게 환기시키기 위해) 실외기 하부에 높임 발판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별도 설치해야 하며, 구매하신 실외기 규격에 따라 루버창과 실외기 배기구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세탁기 용량에 따라 수전 등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한 적정 규격의 세탁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실간 벽체는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별도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이 곤란하며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이 탈락이 발생 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현관문의 개폐방향은 피난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오수관(일반오수, 생활오수)은 합류식으로 배출되므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 활용될 수 있고, 단지계획도의 비상차선 위치는 해당 기관(소방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303동 6호, 7호세대(39㎡타입)과 2호세대(59㎡타입)의 경우 상호간 120° 정도로 인접한 세대로 전면 창호를 통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밖으로 물건을 투척하게 되면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59㎡A~C타입은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는 발코니에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59㎡A~C타입 세대 환기는 기계환기설비(전열교환기)가 발코니 천정에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 될 수 있고,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전기료 및 필터 교체비용이 발생합니다.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등기구는 벽부형 또는 천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화재 시 대피를 위한 세대 간 발코니 벽체 주변에는 물건을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피난에 방해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1302동 일부세대는 도로 표지판으로 인하여 조망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 59A TYPE은 발코니 출입문이 유리로 시공되고 59B, 59C TYPE 발코니 출입문은 PD로 시공됩니다.
- 1305동, 1307동, 1308동, 1309동 근처에는 텃밭이 위치하여 소음, 해충 등 생활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녹색건축인증 관련 세부내용은 본인증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안내되는 이미지, 도면은 참고용 자료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동구청 아파트 사용검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사용검사완료일이 입주개시일과 매우 가까울 수 있으므로 대출 등 은행업무로 인하여 아파트 사용검사필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사일정을 여유롭게 계획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8. 27.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http://www.i-sh.co.kr)

**콜센터 1600-3456**